■ 저작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7호서식] <개정 2026. 5. 7.>

(앞쪽)

제 호

□경고 또는 삭제·전송중단

□계정 정지 **명령서**

□게시판 서비스 정지

□접속차단
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법인명(대표자명)	
대상의 위치정보(URL)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명령 내용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명령 이행기한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명령 사유	적발일시 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	위반행위 내용 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2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·제72조의3·제7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

※ 담당자 정보

① 성명:
② 소속:
③ 전화번호:
④ 전자우편주소:
⑤ 주소:

비고

명령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(뒤쪽)

연번	대상의 위치정보 (URL)	명령 내용	명령 이행기한	명령 사유	
				적발일시	위반행위 내용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